

-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
조례(안) 검토보고서

【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영인)

목 차

연번	안 건 명	소관부서	페이지
1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명)	문 화 관 광 과	1
2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명)	장 레 문 화 사 업 소	7
3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분 당 구 사 회 복 지 과	11
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 애 인 복 지 과	23
5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 인 복 지 과	33
6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희경 의원 등 10명)	여 성 가 족 과	42
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체 육 진 흥 과	48
8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민영미 의원 등 9명)	문 화 관 광 과	59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추선미 의원 등 15명
- ☐ 의안번호: 제 6241호

2. 제안이유

- ☐ 영화·드라마 등 영상문화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남시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성남시는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과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콘텐츠·IT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촬영 지원과 행정 협조 체계 구축 시 높은 효과가 기대됨.
- ☐ 이에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유치와 지원을 통해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 사업 추진(안 제4조)
- ☐ 촬영장소 제공과 협조(안 제5조, 제6조)
- ☐ 상호협력(안 제7조)
- ☐ 홍보(안 제8조)

4. 관계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제2호

5. 조례안 예고

☐ 예고기간: 2026. 3. 26.(목) ~ 3. 30.(월) 【5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 의견: 수용(문화관광과)

☐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이 수용하고자 함

7.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영상물 촬영 지원과 영상문화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촬영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촬영장소 제공, 관계기관 협조, 행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영상물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촬영 유치 및 영상콘텐츠 활용을 통하여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상의 개념을 반영하여 영화 및 드라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공개 형태까지 포함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사업 추진)는 촬영 유치, 홍보 및 지역경제 연계 등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하여 사업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촬영장소 제공)는 시청, 구청 및 공공시설 등을 촬영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촬영장소 협조)**는 관계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 소관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상호협력)**는 촬영 지원을 받은 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홍보 활용, 원상복구, 지역경제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어 촬영 유치 효과를 지역경제로 연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8조(홍보)**는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조례 입안 가능 여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영상물 촬영 지원과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촬영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서구, 영도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촬영장소 제공 및 행정 협조 등을 중심으로 한 촬영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촬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제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촬영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성남시는 그간 촬영과 관련해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해온바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됨.

- ※ 현재 성남시는 촬영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어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며, 추후 추진방향(예산 등)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본 조례안은 촬영장소 제공, 관계기관 협조 등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영상물 홍보 및 지역경제 연계 등 활용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어, 촬영 유치 이후의 활용 단계까지 고려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촬영 유치 및 지원, 홍보 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업 시행 시 일정 수준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 소요는 사업의 규모 및 추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촬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타지방자치단체 사례
2.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타지방자치단체 사례

〈문화관광과 제공〉

○ 영화·드라마 촬영지 관광 활성화 사례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촬영지인 고령 김면 장군 유적지, 쌍용계곡, 김용사 전나무 숲길 등에 방문객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자하문 터널 계단 등이 관광객 방문 코스로 활용되며 도시 관광 콘텐츠로 확장
-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지인 주문진 소돌 방파제가 주요 촬영지로 알려지며 관광객 방문 증가 및 대표 관광명소로 부각

○ 경남도 - 거제시 협력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거제에서 2회차 이상 촬영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사
- 지원범위: 숙박비, 식비, 유류비, 장소 임차료 등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
- 지원규모: 최대 2,000만원

○ 부산영상위원회 - 기장군 협력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장군에서 2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국내외 장편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 지원범위: 기장군 내 지출 비용
- 지원규모: 최대 4,000만원까지 현물 지원

【참고자료 2】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윤혜선 의원 등 15명
- ☐ 의안번호: 제6244호

2. 제안이유

- ☐ 현행 조례의 위원 선정 방식인 ‘추천’은 선정 주체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주민지원협의체 위촉위원을 주민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선출 방식을 변경(안 제8조제2항)

4. 입법예고

- ☐ 예고기간: 2026. 3. 26. ~ 3. 30. 【5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5. 부서의견: 일부수용(장례문화사업소)

- ☐ 일부 수정 후 수용

개정안	부서의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제7기 갈현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선거부터 적용한다.

* 부서의견의 상세자료는 참고자료 1

6. 검토 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촉위원의 선정 방식을 기존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위원 선정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8조제2항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촉위원의 선정 방식을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는 추천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민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위원 선정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선정 방식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도입하여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민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향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자치입법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부서의견
2. 협의체 구성 관련 규정

【참고자료 1】

부서의견

〈장례문화사업소〉

□ 부칙 수정 후 수용

- 현행 조례에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대표 선출 방식은 협의체 규약에 ‘주민투표와 외부면접 중 택일’ 로 규정되어 있음.
- 주민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기존 선관위에서는 면접방식을 고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방식을 주장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협의체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위원후보 선출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향상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 발생 예방 차원에서 조례 개정 필요
- 단,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 및 법적 분쟁 발생 측면에서 현재 미구성 상태인 제6기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후보 선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항을 ‘제7기 갈현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후보 선거부터 적용’ 으로 변경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 발생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후 수용하고자 함.

※ 수정 의견(안)

현행	의원발의안 (개정안)	부서의견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부칙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② ----- ----- ----- ----- <u>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u> ----- -----. 부칙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② ----- ----- ----- ----- <u>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u> ----- -----.(개정안 수용) 부칙 ----- 제7기 갈현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후보 선거-적용--(수정 의견)

【참고자료 2】

협의체 구성 관련 규정

□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 근거법령: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주요내용
 - 정원: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절차: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추천기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 주민대표 선출방법은 협의체 규약에 규정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게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주민대표 선출방법(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자율적 내부규정

○ 자체 선관위 구성

- 공개모집(현수막 게첨, 벽보 부착, 문자 알림 중 택일)을 통해 덕망 있는 주민 7인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후보자 접수 및 선발

- 입후보자 16명 이상 또는 특정 성별 60% 이상 시, 주민투표와 외부 면접 중 택일하여 다득점/다득표 순으로 15명 선발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후보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며 방법은 공개 모집(현수막 게첨, 벽보 부착, 문자 알림 등 택일)을 통하여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⑤ 후보 선출 방법중 주민투표와 외부 면접중 택일할 수 있으며 외부 면접으로 진행할 경우 주무부서(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면접관을 추천받아 실시한다.

제25조【투표방법】

-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위임자를 지정 투표할 수 있다.
(단, 위임장,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분당구 사회복지과)
- ☐ 의안번호: 제 6245호

2. 요구이유

-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하여 경로당이 지역사회 실질적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복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관내 225개소 경로당

구 분		아파트·빌라		주 택 지	
총개소	총회원	개 소	회 원	개 소	회 원
225	6,370	198	5,426	27	944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건강교육: 건강체조, 요가, 웃음치료,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교육
- 취미교육: 공예교육, 문화교육, 노래교실, 종이접기교실, 음악감상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교육
- 사회교육: 스마트폰 교육, 노인인권교육, 교통안전교육, 실버IT교육, 노인복지제도 안내 등 각종 여가활동 교육
- 특별행사: 작품발표회, 1·3세대통합프로그램, 야외 나들이 등

- 지원방법: 경로당별 주 2회(1~2시간) 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경로당 별 프로그램 제공 강사료 및 사업수행 담당자 인건비 등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 예산지원(예정)액 : 275,000천원(연간 소요 비용)
 - 인건비, 사업비(강사료, 프로그램 진행비 등),일반운영비(사무용품비 등)
- 위탁업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강사, 실습전문가 확보 및 운영, 교육기간 중 경로당 어르신 관리
-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공고: 2026년 5월
 - 수탁신청서 접수: 2026년 5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2026년 7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26년 7월
- 비용추계결과
 - 연간 소요예산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비 고
계		275,000	시비 100%	
인건비	급 여	136,908	◦2,281,800원 × 5명 × 12월 = 136,908천원	* 기타 후생 경비는 수탁기관 자부담 처리
	복리후생비	3,000	◦50,000원 × 5명 × 12월 = 3,000천원	
	명 절 수 당	13,691	◦1,369,080원 × 5명 × 2회 = 13,691천원	
	사회보험료	14,940	◦249,000원 × 5명 × 12월 = 14,940천원	
	퇴직적립금	11,409	◦190,150원 × 5명 × 12월 = 11,409천원	
운영비	강 사 료	90,720	◦30,000원 × 48과목 × 63회 = 90,720천원	
	운 영 비	4,332	◦사무용품 구입 등 866천원 × 5개소	사무용품 등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825,000	275,000	275,000	275,000
인건비	539,844	179,948	179,948	179,948
운영비	285,156	95,052	95,052	95,052

4.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노인복지법」 제37조
- ☐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전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운영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임.
- 같은 조례 제4조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 및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며, 본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 활성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임.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무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강사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 또한 공개모집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성과 현장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와 절차는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요약서
3.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분당구 사회복지과】

1. 대상사업: 분당구 「경로당활성화 사업」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임
-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성남시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나. 검토내용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이용 수요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기 위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며,
-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여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

분당구 「경로당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요약서

□ 개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사회교육 및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 사업」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임

□ 추진근거

-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성과평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기관: 225개소 경로당
- 사업예산: 250,000천원
- 수탁(지정)기관 현황

권역별	기 관 명	대표자	위 치	행정동	사업참여기간
1권역(43개소)	분당노인 종합복지관	이정우	불정로50(정자동)	수내1~3동, 정자동, 정자동, 서현1~2동	2008년~현재
2권역(45개소)	중탑 종합사회복지관	강일조	판교로607(야탑동)	야탑1~3동, 삼평동	2018년~현재
3권역(41개소)	청솔 종합사회복지관	김재일	미금로246(금곡동)	분당동, 정자동2~3동, 금곡동	2003년~현재
4권역(45개소)	하얀마을 복지회관	김영환	금곡로25번길10(구미동)	이매1~2동, 구미동, 구미1동	2018년~현재
5권역(51개소)	판교노인 종합복지관	일운 (고화석)	판교역로99(백현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2018년~현재

□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 1권역 분당노인종합사회복지관: 92.5점

총점	참여 경로당 비율	미참여 경로당 노력	운영 프로그램 수	그외 프로그램 수	사업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적 정성	예산 집행을	우수 사례	만족도	홍보 실적
(100)	(20)	(10)	(10)	(5)	(5)	(5)	(10)	(15)	(10)	(10)
92.5	12.5	10	10	5	5	5	10	15	10	10

○ 2권역 중탑종합사회복지관: 95.5점

총점	참여 경로당 비율	미참여 경로당 노력	운영 프로그램 수	그외 프로그램 수	사업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적 정성	예산 집행을	우수 사례	만족도	홍보 실적
(100)	(20)	(10)	(10)	(5)	(5)	(5)	(10)	(15)	(10)	(10)
95.5	17.5	10	10	4.5	5	5	9	15	9.5	10

○ 3권역 청솔종합사회복지관: 93점

총점	참여 경로당 비율	미참여 경로당 노력	운영 프로그램 수	그외 프로그램 수	사업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적 정성	예산 집행을	우수 사례	만족도	홍보 실적
(100)	(20)	(10)	(10)	(5)	(5)	(5)	(10)	(15)	(10)	(10)
93	15	10	10	5	5	5	8	15	10	10

○ 4권역 하안마을복지회관: 92점

총점	참여 경로당 비율	미참여 경로당 노력	운영 프로그램 수	그외 프로그램 수	사업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적 정성	예산 집행을	우수 사례	만족도	홍보 실적
(100)	(20)	(10)	(10)	(5)	(5)	(5)	(10)	(15)	(10)	(10)
92	13.5	10	10	5	5	3.5	10	15	10	10

○ 5권역 판교노인종합사회복지관: 91.5점

총점	참여 경로당 비율	미참여 경로당 노력	운영 프로그램 수	그외 프로그램 수	사업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적 정성	예산 집행을	우수 사례	만족도	홍보 실적
(100)	(20)	(10)	(10)	(5)	(5)	(5)	(10)	(15)	(10)	(10)
91.5	17.5	10	10	5	5	5	5	15	10	9

□ 성과평가 결과

- 경로당이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방식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 경로당 기능 확대를 위해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4~2025년 수행기관 간담회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증액 검토도 필요해 보임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

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
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2025.10.13.>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장애인복지과)
- ☐ 의안번호: 제 6238호

2. 요구이유

- ☐ 2026. 10. 19.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성남시 울동생태 학습원』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현재 수탁자 (법인명)
		부지	조성면적	건물면적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분당구 문정로 145 (울동 359)	5,308	2,780 (야외실습장, 주차장)	799.24 (관리동 439.24/ 온실동 360)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5년
- 예산지원: 526,000천 원(2026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주요업무
 - 장애인 전환교육 실습장
 - 장애인들의 원예치료 및 영농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숲 체험
 - 장애인 재활상담, 진로지도, 바리스타 훈련

- 카페, 온실, 야외정원 운영 등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지원 외 울동생태학습원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수탁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의위원별 배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얻은 법인
-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공고: 2026. 7 ~ 8월 중
 - 수탁신청서 접수: 2026. 8월 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6. 9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10. 15.한
- 비용추계결과
 - 2026년 비용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액	산출내역
총계	526,000	시비 100%
인 건 비	454,306	◦기본급 47,010천원×6명 = 282,060천원 ◦제수당 16,795천원×6명 = 100,770천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71,476천원
운 영 비	36,644	◦수용비 및 수수료 4,682천원 ◦공공요금 22,080천원 ◦제세공과금 5,700천원 ◦차량비 및 연료비 3,888천원 ◦기타운영비(보수교육비) 294천원
사 업 비	35,050	◦바리스타교육사업 6,640천원 ◦원예치료사업 6,900천원 ◦치유농업사업 4,200천원 ◦지역사회통합사업 14,810천원 ◦자원봉사관리사업 2,500천원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2,809,301	526,000	543,335	561,255	579,780	598,931
인 건 비	2,436,200	454,306	470,207	486,664	503,697	521,326
운 영 비	190,700	36,644	37,377	38,125	38,888	39,666
사 업 비	182,401	35,050	35,751	36,466	37,195	37,939

※ 인건비 3.5% 상승율 반영, 운영비 및 사업비 2% 물가 상승율 반영

4.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에 해당함.
 - 같은 조례 제4조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은 장애인의 전환교육, 원예치료 및 체험활동,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방식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질적 수준 유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부합함. 따라서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모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됨.
-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은 장애인의 직업전환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됨.
- 또한 붙임 자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위탁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와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3.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장애인복지과】

1. 대상사업: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검토내용

○ 장애인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자립 능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전환교육 실습장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장애인복지과】

1. 개요

- 2026. 10. 19.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에 대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2.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성과평가)

3. 성과평가 대상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현 위탁운영법인	위탁기간
			부지	조성면적	건물면적		
1	성남시울동생태학습원	분당구 문정로 145 (울동)	5,308	2,780 (야외실습장, 주차장)	799.24 (관리동, 온실동)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 복지재단	2021.10.20. ~2026.10.19.

4. 성과평가 결과

-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 【장애인복지과-10530호】

성과지표								총점	평가 결과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12)	(10)	(5)	(5)	(8)	(40)	(5)	(15)	(100)	
12	9	4.3	4.3	6.2	40	3.5	13	92.3	매우 우수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20, 2017.9.20.>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2025.10.13.>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2.24.>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노인복지과)
- ☐ 의안번호: 제 6239호

2. 요구이유

- ☐ 2026. 10. 31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m ²)	주 요 용 도	현 위탁운영법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 대지면적 2,581 • 연 면 적 10,780 (지하3층, 지상4층)	강당,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부설주차장 등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26. 11. 1. ~ 2031. 10. 31.)
- 예산지원(예정)액 (인건비, 운영비) : 2,822,000천원
 - ※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변경 가능
- 주요업무
 -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 취업상담 및 알선
 -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 부설(공영) 주차장 운영
-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지원 외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공고: 2026. 7. 20. ~ 8. 3.
- 수탁신청서 접수: 2026. 7. 29. ~ 8. 3.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6. 9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10월 중

○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14,913,471	2,822,000	2,900,103	2,980,418	3,063,009	3,147,941
인 건 비	11,501,182	2,166,300	2,231,289	2,298,228	2,367,175	2,438,190
운 영 비	3,412,289	655,700	668,814	682,190	695,834	709,751

※ 2026년 예산 기준 도비2%, 시비98%

※ 인건비 3% 상승율 반영, 운영비 2% 물가 상승율 반영

4.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1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임.
- 같은 조례 제4조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상담, 취업지원, 건강관리, 평생교육 및 여가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 기준(전문성,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 또한 이에 따라 공개모집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됨.
-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 시설로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됨.
- 또한 성과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존 위탁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재계약을 통한 운영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와 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재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 등 관련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3.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노인복지과】

1. 대상사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관리)1항
 -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내용

-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임. 노인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시설관리 수준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노인복지과】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실적(2026. 2. 28. 기준)

2. 성과평가

가. 관련근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성과평가 결과 보고(노인복지과-12460호)

나. 평가기간: 2021. 11. 1. ~ 2026. 2. 28.

다. 평가지표: 5개 지표, 11개 항목

라. 평가결과: 94.5점(전반적 양호)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만족도 제고 노력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마. 총 평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6.20.> <일부개정 2017.7.19.>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7.19.>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19.>

제11조(보조)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6.6.20., 2017.7.19.>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24.>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2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일부개정 2020.2.24.>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2025.10.13.>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서희경 의원 등 10명
- ☐ 의안번호: 제 6240호

2. 제안이유

-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 및 교육, 주거 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평범하고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안 제3조~제5조)
- ☐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제7조)
- ☐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 ☐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안 제10조)

4. 관계법령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5. 조례안 예고

- ☐ 예고기간: 2026. 3. 26.(목) ~ 3. 30.(월) 【5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 의견: 수용(여성가족과)

-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한 사항으로 수용하고자 함.

7.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자녀 양육 및 교육, 주거환경 개선,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청소년부모”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개념¹⁾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의 범위를 부모의 연령 기준 및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 해석상 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원 대상 등)**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7조(실태조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지원사업)**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지원, 학업 및 취업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6호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지원,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지원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입안 가능 여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추진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례와 유사한 체계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업 시행 시 일정 수준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 소요는 대상자 규모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 및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적·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현황
2.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현황

〈여성가족과 제공〉

□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현황

- 대 상: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정
- 지원 및 예산현황

구 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 용	아동양육비	· 25만원/월 자녀1인당	· 2세미만:40만원/월 자녀1인당 · 2세이상:37만원/월 자녀1인당
	학습지원비	-	· 검정고시 또는 중·고교 재학생 학습지원: 연 154만 이내/가구당
	자립촉진수당	-	·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10만원/가구당
지원대상		2세대 4명 (중원구 1세대, 분당구 1세대)	12세대 27명 (수정구 5세대, 중원구 7세대)
예 산		20,000천원 (국 50%, 도 7.5%, 시 42.5%)	24,580천원 (국 80%, 도 10%, 시 10%)

□ 타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

- 서울특별시
 -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45만원
 - 중위소득 63% 초과 90%이하 청소년부모: 자녀1인당 월 20만원
- ※ 기타 시군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남시 지원내용 동일

【참고자료 2】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체육진흥과)
- ☐ 의안번호: 제 6243호

2. 요구이유

- ☐ 2026. 9. 30.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	비고
성남축구센터	정자동 4-12 일원	- 클럽하우스: 라커룸, 숙소(26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식당, 샤워실 등 - 천연잔디구장(68×105m) 2면	
탄천종합운동장 가변식 관람석	야탑동 486	693석(너비10.35m×높이4.2m, 철골트러스)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예산지원: 1,278,994천원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1,278,994	300,880	978,114

○ 위탁대상 사무: 체육시설 운영관리 전반

- 종사자: 6명
- 성남축구센터 및 탄천종합운동장 가변식 관람석 시설 운영
- 프로팀 선수 훈련 지원 및 경기 운영 관련 시설 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각종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무

○ 향후 추진일정

- 2026. 4. : 체육시설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26. 9. : 위·수탁자 협약서 체결

○ 비용추계결과

- 2026년 비용산출내역

구 분	사업내용	산출내역	비고
계	시비 100%	1,278,994,000원	
인건비	- 기본급 및 수당(팀장) - 기본급 및 수당(시설인력) - 기본급 및 수당(경비인력) - 법정부담금(4대보험) - 법정부담금(퇴직적립금)	- 4,455,000원×12월×1명= 53,460,000원 - 3,571,000원×12월×4명= 171,408,000원 - 2,537,000원×12월×1명= 30,444,000원 - 3,997,667원×6명= 23,986,000원 - 3,600,000원×6명= 21,6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요금 - 상하수도요금 - 통신요금 - 열요금 - 화재보험료 기타	- 7,916,666원×12월= 95,000,000원 - 3,750,000원×12월= 45,000,000원 - 1,250,000원×12월= 15,000,000원 - 6,666,666원×12월= 80,000,000원 - 822,333원×12월= 9,868,000원	
지급수수료	- 천연잔디 위탁관리 용역비 - 경비미화 위탁관리 용역비 - 안전관리 용역비 - 시설확충 소규모 공사비	- 31,666,666원×12월= 380,000,000원 - 1,250,000원×12월= 150,000,000원 - 1,914,833원×12월= 22,798,000원 - 20,000,000원× 1식= 20,000,000원	
수선유지 보수비	- 수선유지비(시설물 유지, 개선) -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재료비, 소모품 등)	- 112,004,000원×1식= 112,004,000원 - 4,035,500원×12월= 48,426,000원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6,524,155	1,278,994	1,291,784	1,304,702	1,317,749	1,330,926

4. 관계법령

-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2026. 9. 30.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사항임.
- 같은 조례 제4조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설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위탁 시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방식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²⁾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가 향후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됨.
- 성남축구센터 및 탄천종합운동장 가변식 관람석은 경기 운영 지원, 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이 요구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며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또한 성과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존 위탁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운영 실적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와 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재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2)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사무의 연속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성남시 체육시설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3.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체육진흥과〉

□ 검토개요

- 검토목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위탁시설: 성남축구센터 및 탄천종합운동장 가변식 관람석
- 수탁기관: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
- 관련근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 시설은 프로축구단 선수 훈련 및 경기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설로 직영 또는 타 기관 위탁 등 다른 수행 방식보다는 시설 이용 주체인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사회 대상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3. 경제의 효율성

- 인력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주 용역을 병행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달성함
- 예산 집행 또한 점차 안정화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프로선수 훈련 및 경기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시설 운영과 선수단 운영을 연계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함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예산 집행 및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평가 및 정산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이 가능함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성남축구센터는 프로선수 전용 훈련시설로서 시설 이용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의한 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해당 시설의 실제 사용 주체로서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무를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2】

성남시 체육시설 운영 성과평가 요약서

〈체육진흥과〉

□ 주요 실적

○ 운영 분야

- 프로팀 선수 자체 훈련 및 타 구단과의 친선경기 진행(매주 1~2회)
- 해외 유명구단(토트넘, 뉴캐슬) 초청 훈련 지원(10회)

○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 여자축구 코칭(152회) 및 여자축구 대회(1회) 개최: 지역 여성 축구팀 육성
- 어린이 축구교실(18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지원
- 축구클리닉(축신축왕)(1회): 구단 어린이 멤버십 회원 대상
- 지역 청소년 및 해외 학생 대상 클럽하우스 견학(3회)

○ 시설 점검 분야

- 위험성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중대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건축물, 저수조,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법정 안전점검 적기 실시

○ 시설 보수 분야

- 하자 보증기간(2 ~ 3년) 내 건물 내외 크랙, 누수 등 근본적인 하자 처리 완료
- 주차장 미끄럼방지, 천장 누수 보수, 배관역류 방지 등 선제적 공사로 위험 요인 사전 차단

○ 예산 집행 분야

- 위탁 초기 운영 체계 정비 과정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운영 경험 축적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단위: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3개월)
연간교부액	1,278,994	1,558,994	383,949
집 행 액	1,105,730	1,058,718	220,753
집행잔액	173,264	500,276	163,196

○ 인력 운영 분야

- 시설관리 인력은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 및 복수 업무 수행 등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화됨
- 특히 미화 및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여 기간제 인력을 축소하고 현재 정규 직원 6명 체제로 운영 중

(단위: 명)

구 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총인원	6	9	8	10
직 원	6	9	8	4
기간제	0	0	0	6

□ 성과평가

○ 관련근거

-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재계약 추진계획 【체육진흥과-5238호】

○ 평가기간: 2023. 10. 1. ~ 현재

○ 평가지표: 2개 지표, 7개 항목

○ 평가결과: 75점(양호)

○ 총 평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성남축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예산 집행의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9.02.18.>

② 제1항에 따라 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03.21, 2013.12.09., 2019.2.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2021.8.2.>

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9.02.18., 2021.2.19.>

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⑥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20.2.2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2025.10.13.>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민영미 의원 등 9명
- ☐ 의안번호: 제 6242호

2. 제안이유

-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 이에 성남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4. 관계법령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조의2, 제4조
-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5. 조례안 예고

- ☐ 예고기간: 2026. 3. 26.(목) ~ 3. 30.(월) 【5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 의견: 수용(문화관광과)

- ☐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별도 이견 없이 수용하고자 함

7.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성남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예술인의 범위 설정,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예술인의 개념, 예술인 기회소득 및 일정소득 수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정의를 준용하고 기회소득의 개념과 소득 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과 경기도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기반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지급대상)**는 지원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의 기본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지급신청)**는 기회소득의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음.

- **안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안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는 지급대상자의 수령 거부, 사망, 전출, 부정수급 등의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두고 있음.
- **안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및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안 부칙 제2조**는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창작수당 지급 제도를 기회소득 지급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예술인 지원 방식이 기존의 창작활동 유지 중심 지원에서 창작활동의 지속을 위한 기회 보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의미를 가짐.

□ 조례 입안 가능 여부

- 「예술인 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원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이 광역과 기초 간 연계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본 조례안은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기회소득 형태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존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기회소득 지급 체계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원 정책의 방식이 사후적 보상에서 창작활동의 지속을 위한 기회 보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규모와 지원 대상, 지급 수준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지원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체계 및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검토 시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예술인 소득지원사업 현황
2. 비용추계(안)
3.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예술인 소득지원사업 현황

〈문화관광과 제공〉

□ 예술인 소득지원사업 비교

구분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지급기준	개인별 중위소득 120% (문화체육관광부 중복제외)	개인별 중위소득 120% (심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중복제외	문체부 활동준비금 수혜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대상	도내 28개 시군 ※ 미참여: 성남(정책방향), 용인(의회부결), 고양(재정부담)	전국 도시군
사업규모	7,056명 (시·도비, 50/50) ※ 도비: 5,292백만원	20,000명 선정 (국비) ※ 60,000백만원
지원금액	연 150만원/인	일반 300만원 / 신진 200만원
지급방법	연 2회(분할)	연 1회(현금, 격년제)
지급유형	현금	현금

□ 2022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시·도비 50/50)

-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 창작·발표 기회 축소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지속 및 예술 생태계 유지
- 참여시군: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참고자료 2】

비 용 추 계(안)

〈문화관광과 제공〉

○ 비용발생원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발생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구분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1,807,200
사회보장적수혜금	시비	1,205명(3,012명의 40%)×1,500,000원×50%	903,600
	도비	1,205명(3,012명의 40%)×1,500,000원×50%	903,600

※ 기준: 2026. 1. 1.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3,012명(경기도 예술정책과-2617(2026. 3. 5.))

※ 필요사업량: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의 40%(2024~2025년 예술활동증명 인원대비 지급인원 비율 평균(경기도))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10,236,000	1,807,200	1,927,200	2,047,200	2,167,200	2,287,200
도비(50%)	5,118,000	903,600	963,600	1,023,600	1,083,600	1,143,600
시비(50%)	5,118,000	903,600	963,600	1,023,600	1,083,600	1,143,600
※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수		3,012명	3,212명	3,412명	3,612명	3,812명
※ 지원인원(유효자의 40%)		1,205명	1,285명	1,365명	1,445명	1,525명

○ 재원조달방안: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도비 50%, 시비 50%)

【참고자료 3】

관계법령 발췌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3. 3. 2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2.]